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2017.1.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 - 870 - 54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5.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8.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안전성조사의 내용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 사진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
3. 제조 연월(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을 포함한다)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해당 어린이제품을 인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가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 및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령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기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질문(이하 "출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 등 7일 전까지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등의 계획을 사업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출입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제7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명령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사업자의 보고 의무)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설계·제조 또는 어린이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유통한 어린이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처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고 현장, 판매처, 제조공장 및 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2. 어린이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고 및 피해 유형 등의 확인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에게 사고 현장, 판매처, 제조공장 및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해당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의 제조 시설·공정 및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사고조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기관은 발생한 어린이제품사고에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업무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업무범위와 관련이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리고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관한 모델의 구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성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안전인증의 조건)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보완
2. 어린이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조건의 이행 결과 보고

제20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보관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정기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인증서에 표기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공장이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검사를 하기 10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검사의 일시
2. 검사의 대상
3. 검사원의 성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한 후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보관)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는 공장심사기준 중 자체검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제23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보관 서류) 법 제1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최근 2년간의 자체검사 실적을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면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제 신청 후 최초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직전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 최근 2년간의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직전 4년 동안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검사에서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제2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4.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

②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협회는 그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③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출고 전에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 다른 안전인증기관, 시·도지사 및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체명
 2.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의 내용·처분일과 사유(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의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特殊高價)의 시험·검사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확인 시험·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확인 시험·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제3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①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제3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①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7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
2. 법 제22조제7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7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을 받은 협회는 그 신청 내용이 안전확인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확인기록의 작성·보관 방법) ①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1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39조(안전확인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③ 안전확인표시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즉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험·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경고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③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3.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제44조(안전정보의 수집·관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어린이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2. 법 제9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내용 및 결과
3. 법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내용 및 결과

4.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5. 그 밖에 어린이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제45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내부규정 등 활동자료
 2.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
 3. 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 향상을 위한 활동사항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소개서
 3. 어린이제품 안전친화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 ⑥ 그 밖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어린이제품명과 상표
 3. 결함의 내용과 원인
 4.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5. 결함의 시정 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시정 기간
- ② 시·도지사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7조(시·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과 목록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부칙 <제133호, 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포

합되지 아니한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2016년 6월 4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안전·품질표시는 2018년 6월 3일까지 제27조 및 제42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를 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사목, 제5호아목부터 타목까지, 거목, 버목, 저목 및 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5호노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238호, 2017.1.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제4항"을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별표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2. 어린이 놀이기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4. 어린이용 비비탄총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1. 유아용 섬유제품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안전기준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5. 아동용 이단침대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6. 완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완구 안전기준
7. 유아용 삼륜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8. 유아용 의자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9. 어린이용 자전거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10.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안전기준
11. 학용품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학용품 안전기준
12. 보행기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보행기 안전기준
13. 유모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모차 안전기준
14. 유아용 침대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15.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로 포함)	나.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16. 유아용 캐리어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17.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가. 어린이용 가죽제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면봉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면봉 안전기준
다.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안경테 안전기준
라. 어린이용 물안경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바.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사.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아. 어린이용 스키용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키 용구 안전기준
자. 어린이용 스노보드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차. 쇼핑카트 부속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쇼핑카트 부속품 안전기준
카. 어린이용 장신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타. 어린이용 키보드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키보드 안전기준
파.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하. 어린이용 가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거. 아동용 섬유제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2.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

보고, 제출 및 검사 항목(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료제출, 보고 및 검사 항목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는 자	가.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설비 현황 나. 안전인증 현황 및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 다. 자체검사 기록 라. 제조 장소 및 제조 위탁처 마.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바.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량 또는 대한민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수량 및 판매처 현황(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2.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수입하는 자	가. 안전인증 현황, 수입수량, 제조국 및 제조업체 현황 나. 제품명,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다. 법 제17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보관 현황
3.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 수량 및 판매처·대여처 현황
4.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는 자	가. 안전확인 현황 및 제조수량 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기록의 비치 현황
5.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수입하는 자	가. 안전확인 현황, 수입수량, 제조국 및 제조업체 현황 나. 제품명,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기록의 비치 현황
6.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수량 및 판매처·대여처 현황
7.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는 자	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현황 및 제조수량 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기록의 비치 현황
8.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수입하는 자	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현황, 수입수량, 제조국 및 제조업체 현황 나. 제품명,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다. 법25조제6항에 따른 기록의 비치 현황

9.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 수량 및 판매처·대여처 현황
-------------------------------	-----------------------

[별표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정지 2개월부터 3개월까지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1)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일부 지정취소
2)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	업무	업무	지정취소

조건을 붙인 경우	제1항제6호	일부정지 3개월	일부정지 6개월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7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8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9호	지정취소		

비고

1. 지정취소란 위반행위를 한 인증기관이 수행 중인 전체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하며, 일부 지정취소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한다.
2. 업무 일부정지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의 정지를 말한다.
3.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중요 시험항목(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의 시험을 누락한 경우
 - 나.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한 경우
 - 다.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 라.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마. 적절하지 않은 시험설비 또는 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 바.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4.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중요 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 나.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 다. 외부 시험성적서를 잘못 검토하여 안전인증한 경우
 - 라. 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가 없거나 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작성·관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

[별표 6]

어린이제품의 모델에 관한 구분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제품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
1.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가. 공기 주입 물놀이기구: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나. 공기 주입 보트: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다. 수영 보조용품 1) 착용형: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2) 미착용형: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2. 어린이 놀이기구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4. 어린이용 비비탄총	모양별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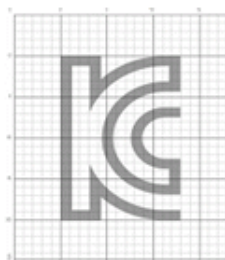
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인증번호:

나. 도안요령

- 1)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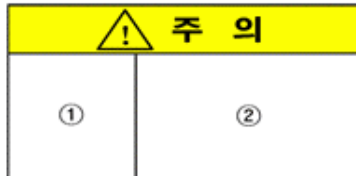
나.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별표 8]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관련)

1. 표시기준

가.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 모형



나. 도안요령

- 1)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2)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의 경우



- 3)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4)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주의·경고의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 표지(symbol) 예시>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M002 사용설명서/책자 를 참조하십시오	M015 가시성이 높은 옷반사조끼를 착용하십시오	M020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M014 머리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M018 안전띠를 착용하십시오	M049 보호용 플러스포츠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9.2002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9.2010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9.2001 입에 넣지 마시오	9.2004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지 마시오	9.2008 눈에 접촉하지 마시오	9.2011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마시오	9.2017 코에 넣지 마시오	9.2012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9.2018 3세 이하 사용금지	9.2019 3세 이상 사용금지	9.2016 귀에 넣지 마시오			

[별표 9]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표시 사용금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1호	인증취소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법 제21조제1항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취소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2호	사용금지 2개월	사용금지 4개월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2호	인증취소		
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라.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4호	인증취소		
마.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5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6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사.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7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아.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8호	인증 취소		

[별표 10]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일부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3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1)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4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일부 지정취소
2)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4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5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6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7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비고

- 지정취소란 위반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이 수행 중인 전체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하며, 일부 지정취소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한다.
- 업무 일부정지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업무의 정지를 말한다.
-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중요 시험항목(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의 시험을 누락한 경우
 - 나.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한 경우
 - 다.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 라.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마.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바. 개정된 최신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중요 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 나.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 다. 잘못된 외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 라. 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가 없거나 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작성·관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

[별표 11]

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39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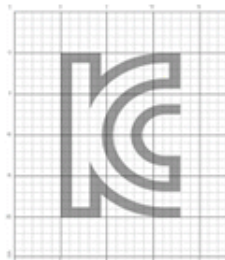
가. 안전확인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

나. 도안요령

- 1)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가.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별표 1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2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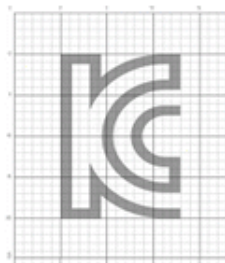
1. 표시기준

가. 도안모형



나. 도안요령

- 1) 안전에 관한 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에 관한 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가. 안전에 관한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표면에 안전에 관한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별표 13]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5조제5항 관련)

1. 표시기준

가. 어린이제품안전친화제품표시의 도안 모형



나. 도안요령

- 1) 어린이제품안전친화제품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2) 어린이제품안전친화제품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가. 어린이제품안전친화제품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표면에 안전에 관한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 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별표 14]

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 55,000원 나.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경우 제5호의 "시험·검사"를 "제품검사"로 본다) 다.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내 공장심사: 250,000원(공장심사비)+출장비 2) 해외 공장심사: 600,000원(공장심사비)+출장비
2.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 변경 신청 접수 비용: 20,000원 나.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시험·검사"를 "제품검사"로 본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다만,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 가.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제5호에의 "시험·검사"를 "제품 정기검사"로 본다) 나. 공장검사 비용: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공장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내 공장심사 가)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품목수+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품목수+(품목별 인증 모델수-5)×20,000원+출장비 2) 해외 공장심사 가)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품목수+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품목수+(품목별 인증 모델수-5)×20,000원+출장비
4.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로서 시험·검사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 가. 기본료: 시험·검사 신청서의 접수·검토·지원인력·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비용

	나. 인건비: 시험·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수수료: 그 밖에 현장 출장비, 시험·검사 대상 공산품의 운반비 등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가. 다음 세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안전확인 신고 수수료 1) 신고접수 비용: 50,000원 2) 제품시험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나. 다음 세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안전확인 변경신고 수수료 1) 변경신고 접수 비용: 내용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비용(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비고

1.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을 신청할 때 안전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안전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안전성검사 결과서를 발급할 때에 정확한 내용을 산출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해야 한다.
2.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3. 제5호 나목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4. 수수료의 경우 각 기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된 수수료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을 수 없다.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제2호라목·버목·서목 및 어목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줄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파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판매업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안 즉시 해당 어린이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위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 결과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1항	500	1,000	1,500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1호	400	500	600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2호	500	600	700
라.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3호	700	800	900
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4호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500	7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바.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5호			
1)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500	7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2)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사.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법 제43조제2항 제6호			

진열 또는 보관한 자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제7호	300	350	400
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8호	300	350	400
차.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2항 제9호	700	800	900
카.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10호	700	800	900
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	법 제43조제2항	500	600	700

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11호			
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1호	300	350	400
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2호	400	450	500
거.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3호	300	350	400
너.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법 제43조제3항 제4호	350	400	450
더.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5호	300	350	400
러.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6호	400	450	500
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법 제43조제3항 제7호			
		250	280	300
		200	230	260
		150	180	210
		100	130	160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법 제43조제3항 제8호	300	350	400
서.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9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어.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법 제43조제3항 제10호	300	350	400
저. 법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11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처.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	법 제43조제3항 제12호	130	260	390

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 시를 하지 않은 자				
커.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 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 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 업에 사용한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 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3항 제13호	150 130 100 80 50	170 150 120 100 70	200 180 150 130 100
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 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 은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 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3항 제14호	250 200 150 100 50	280 230 180 130 80	300 260 210 160 110
퍼.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 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 추어 두지 않은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 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3항 제15호	150 130 100 80 50	170 150 120 100 70	200 180 150 130 100
허. 법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 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 성·보관하지 않은 시험·검	법 제43조제3항 제16호	300	350	400

사기관				
고. 법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17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노.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18호	130	260	390
도.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법 제43조제3항 제19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로.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20호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모.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21호	300	350	400
보.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 제22호	150	170	200
소.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법 제43조제3항 제2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않은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법 제43조제3항 제24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30	2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조.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 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법 제43조제3항 제25호	250	280	300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어린이제품 조사원증
사 진 3cm × 4cm
성 명
국가기술표준원
52mm × 74mm [백상지 120g/㎡]

(뒤 쪽)

어린이제품 조사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조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상표명	인증번호 (신고확인번호)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권고/명령날짜	
	권고/명령내용	
	☐ 안전인증대상 ☐ 안전확인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수거등의 조치 방법과 기간		
수거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수거등의 권고·명령 해제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제품정보	문서번호	받은 날짜
	제품명	모델명
	상표명	인증번호 (신고확인번호)
	권고/명령날짜	
	권고/명령내용	
	[] 안전인증대상 [] 안전확인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유형	[]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 [] 개선조치 [] 제조·유통금지	
해제 신청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 신청사유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십시오.
3. 권고 등의 공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를 제품정보란에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 안전인증대상 (인증번호:)	
	☐ 안전확인대상품 (신고번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 미준수 사유

안전기준 미준수 내용(해당 안전기준명, 부적합 내용 등)

향후 수거 등 조치 계획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사고명	신고자

사고제품 정보	제품명	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 안전인증대상(인증번호:)	
	[] 안전확인대상품(신고번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고 내용

내부사고원인 분석내용

향후 조치 계획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결함명		신고자	
결함제품 정보	제 품 명		모델명
	제 조기간 (수입기간)		제 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 안전인증대상(인증번호:)		
	☐ 안전확인대상품(신고번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결함 내용

결함의 원인 분석결과

향후 조치 계획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결함이 발견되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전자메일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상표명	인증번호 (신고확인번호)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 안전인증대상 ☐ 안전확인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수거 등의 조치 방법과 기간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상표명	인증번호 (신고확인번호)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 안전인증대상 [] 안전확인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자발적 수거등을 하게 된 사유		
자발적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자발적 수거등의 조치 방법과 기간		
자발적 수거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상표명	인증번호 (신고확인번호)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 안전인증대상 [] 안전확인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보고 유형	1. 외국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3.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1호 또는 2호의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수거 등의 내용과 실적		
수거 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의 조치를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제 호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

1. 명 칭:
2. 소재지:
3. 법인·단체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대표자 성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

※ 변경사항은 뒤쪽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변경사항 기록란]

연월일	변경사항	작성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주소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업무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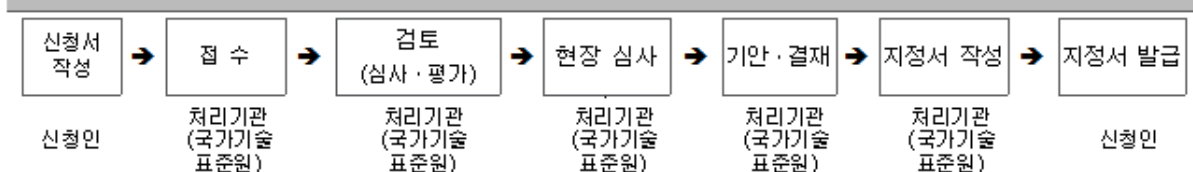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음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주소		
업무범위 변경사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 업무범위가 변경(추가)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업무 범위:

위 기관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

※ 변경사항은 뒤쪽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변경사항 기록란]

연월일	변경사항	작성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공장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증대상	안전기준상의 어린이제품명	구분	
		제조 ()	수입 ()

인증 신청 내용

품목분류번호 (HS)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제조사 제시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업체명	공장심사 희망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인증 결과

판정			
판정 사유 (합격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항목	기준	결과
비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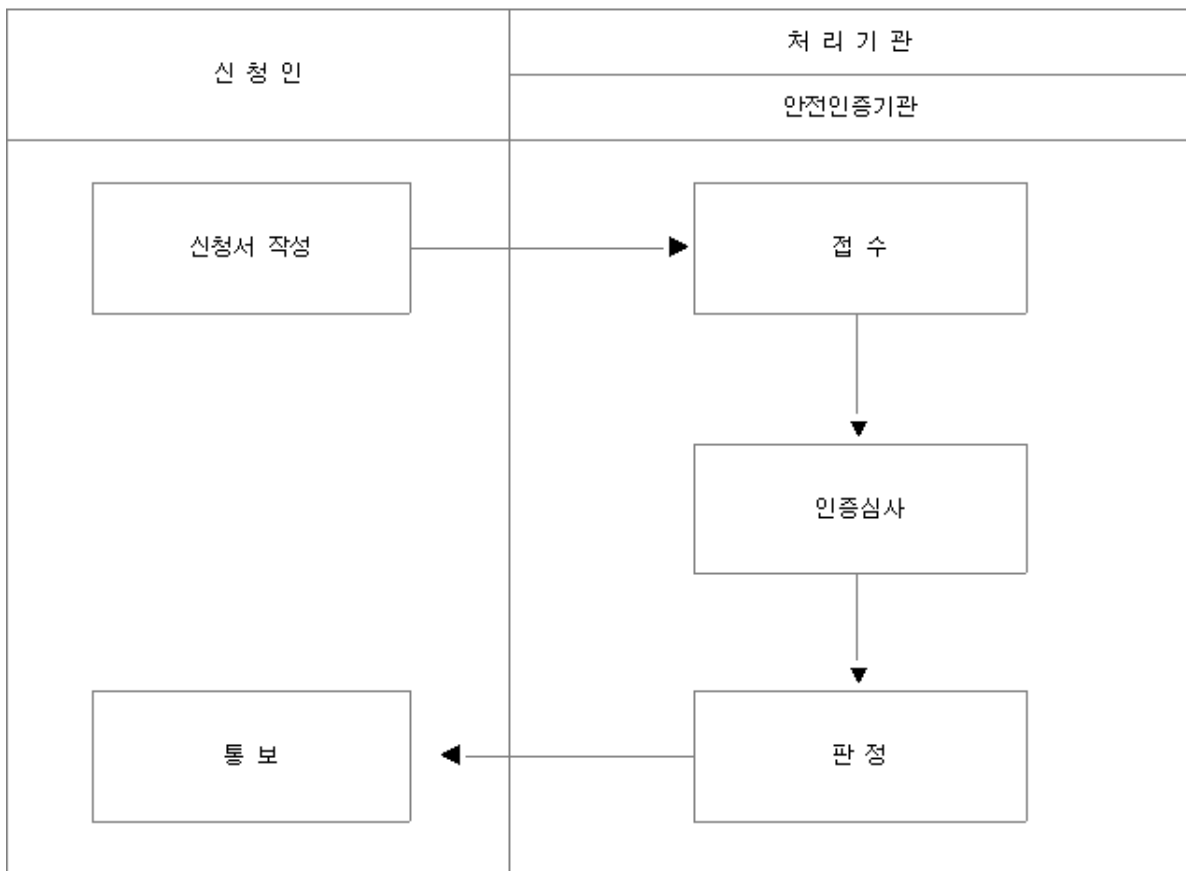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안전인증서						
안전인증번호						
제조업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제조공장 소재지					
안전인증 내 용	어린이제품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 조자 제시 모델명					
	최초 인증일					
	정기검사 내 용	1회	2회	3회	4회	5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조제 1항제 1호 및 제 15조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 안전인증 변경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뒤쪽에 적습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변경사항 기록란]

연월일	변경사항	작성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서식]

안전성 증명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알 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증대상	안전기준상의 어린이제품명		

신청 내용

품목분류번호 (HS)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제조사 제시 모델명	수량 (단위)	제조사		검사희망일	검사희망장소
				제조국가	제조업체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조제 1항제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제 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검사 결과

판정			
품목검사번호			
판정 사유 (합격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조제 1항제 2호에 해당하지 않음		
	[] 제품검사기준에 부적합	항목	
		기준	
		결과	
비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 15조제 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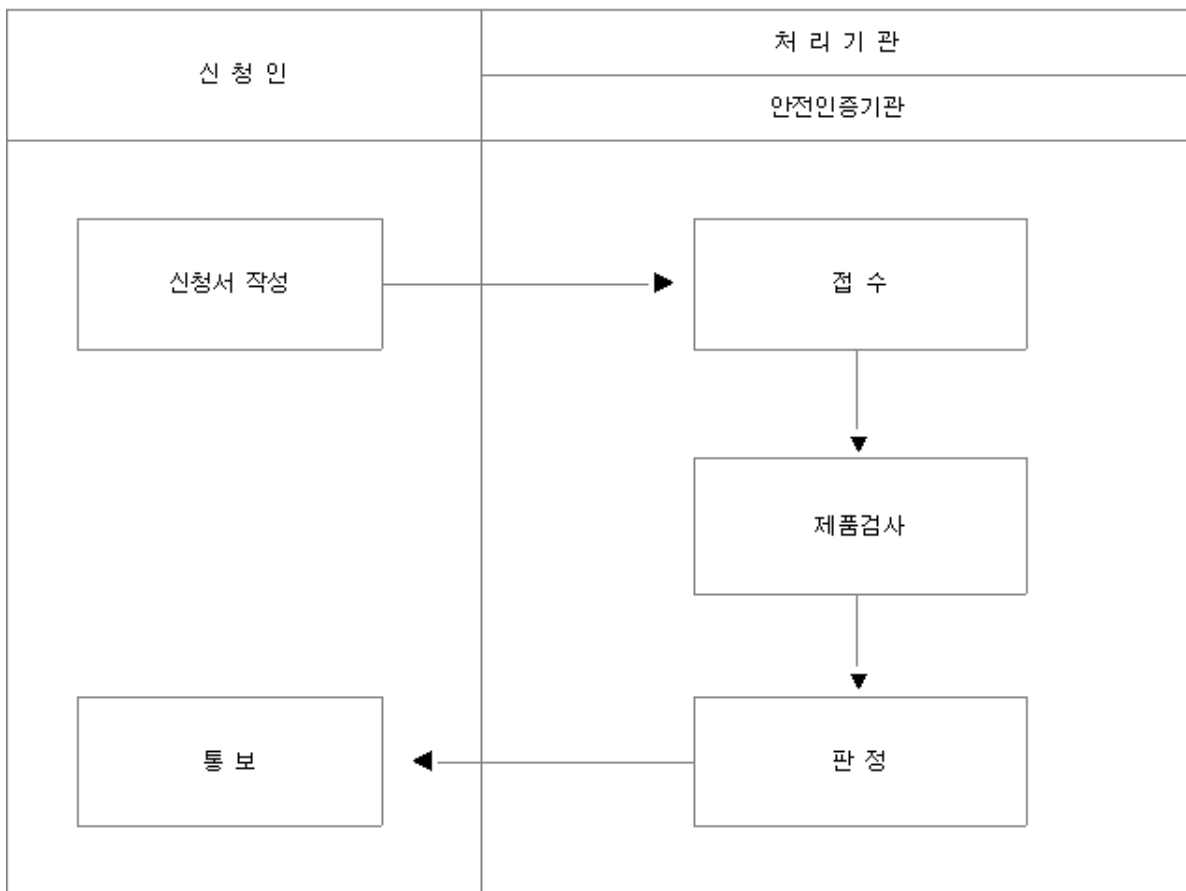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조제 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서식]

안전성 증명서	
안전인증번호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제품검사 내용	어린이제품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자 제시 모델명
	수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품검사만을 한 결과에 따라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서식]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안전인증번호			
변경 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인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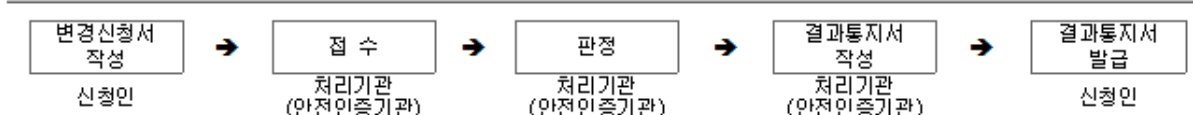
판정			
판정 사유 (합격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항목	기준	결과
비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9호서식]

재검사 신청서 (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제품명 및 모델 구분		
안전인증번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조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제 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재검사신청 사유서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48조에 따른 수수료
재검사 결과		
판정		
판정 사유 (합격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항목	기준
	결과	
비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 21조제 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안전인증번호			
면제 신청 내용	어린이제품명	품목분류번호(HS)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사 제시 모델명	
정기검사 면제 요건 (모두 충족)	1. 직전의 정기검사 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최근 2년간의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검사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최근 2년간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면제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판정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통보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개발·수출·전시회·박람회용)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제 신청 내용	어린이제품명	품목분류번호(HS)
	제조사 제시 모델명	수량
	수입 예정일(수입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수출 예정일(수출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출품 예정일(출품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안전인증 면제 사유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연구·개발용 [] 수출용)	
	[] 법 제18조제1항제2호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통관 세관명		
사용 장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확인 결과 내용

공 산 품 명	품 목 분 류 번 호(HS)	제 조 자 제 시 모 델 명	수 량	수 입 예 정 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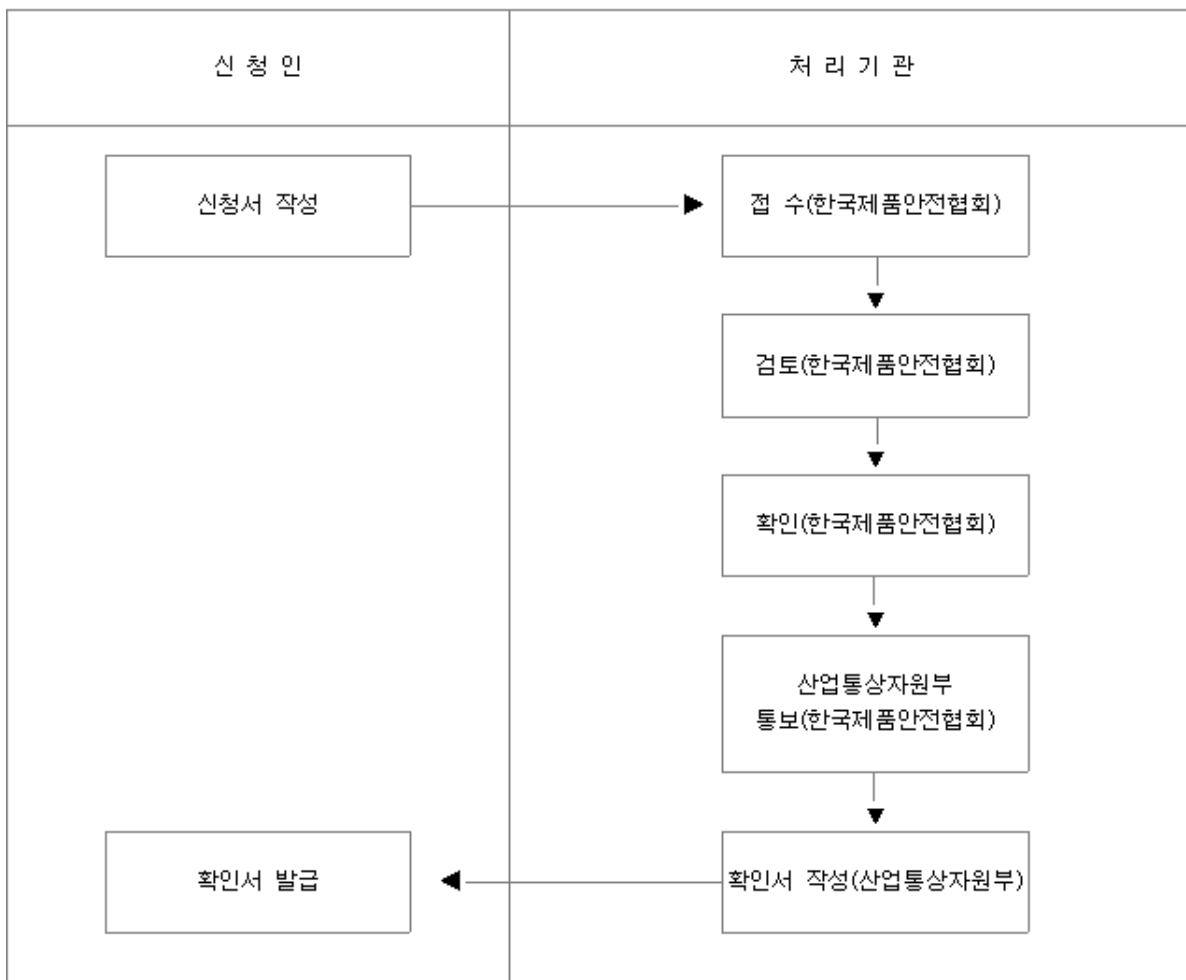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안전확인 신고서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검용)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용	어린이제 품명	품목분류번호(HS)
	안전기준 상의 모델 구분	제조업체명
	제 조국명	제 조자 제시 모델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신고확인증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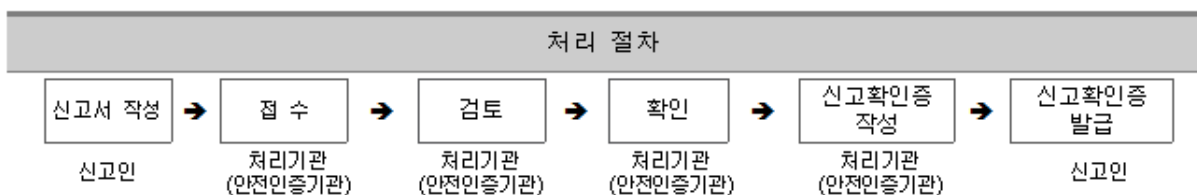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안전확인 변경신고서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검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 용	어린이제품명	품목분류번호(HS)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제조자 제시 모델명
	신고확인증 번호	
변경 신고 내 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신고확인증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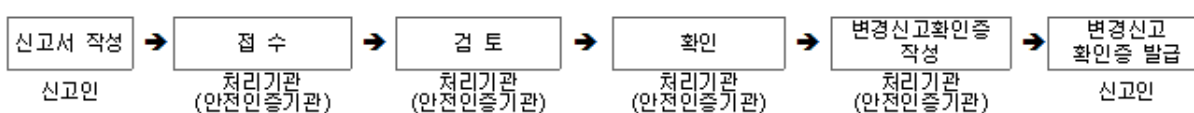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업무 수행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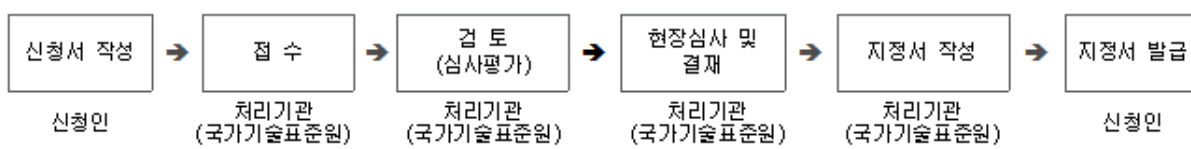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음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업무수행 범위:

위 기관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안전확인 시험·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 화번호		
	주소	팩 스번호		
안전확인 시험·검사 업무범위 변경사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시험·검사 업무범위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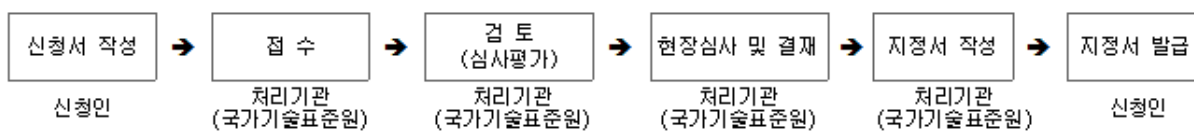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1부	수수료 없음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 (연구·개발·수출·전시회·박람회용 등)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 겸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 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제 신청 내용	어린이제품명	품목분류번호(HS)	
	제조사 제시 모델명	수량	
	수입 예정일(수입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수출 예정일(수출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출품 예정일(출품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안전 확인 면제 사유	☐ 법 제22조제7항제1호(연구·개발용 ☐ 수출용 ☐) ☐ 법 제22조제7항제2호(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법 제22조제7항제5호		
통관 세관명			
사용 장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7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확인 결과 내용				
어린이제품명	품목분류번호(HS)	제조사 제시 모델명	수량	수입/수출 예정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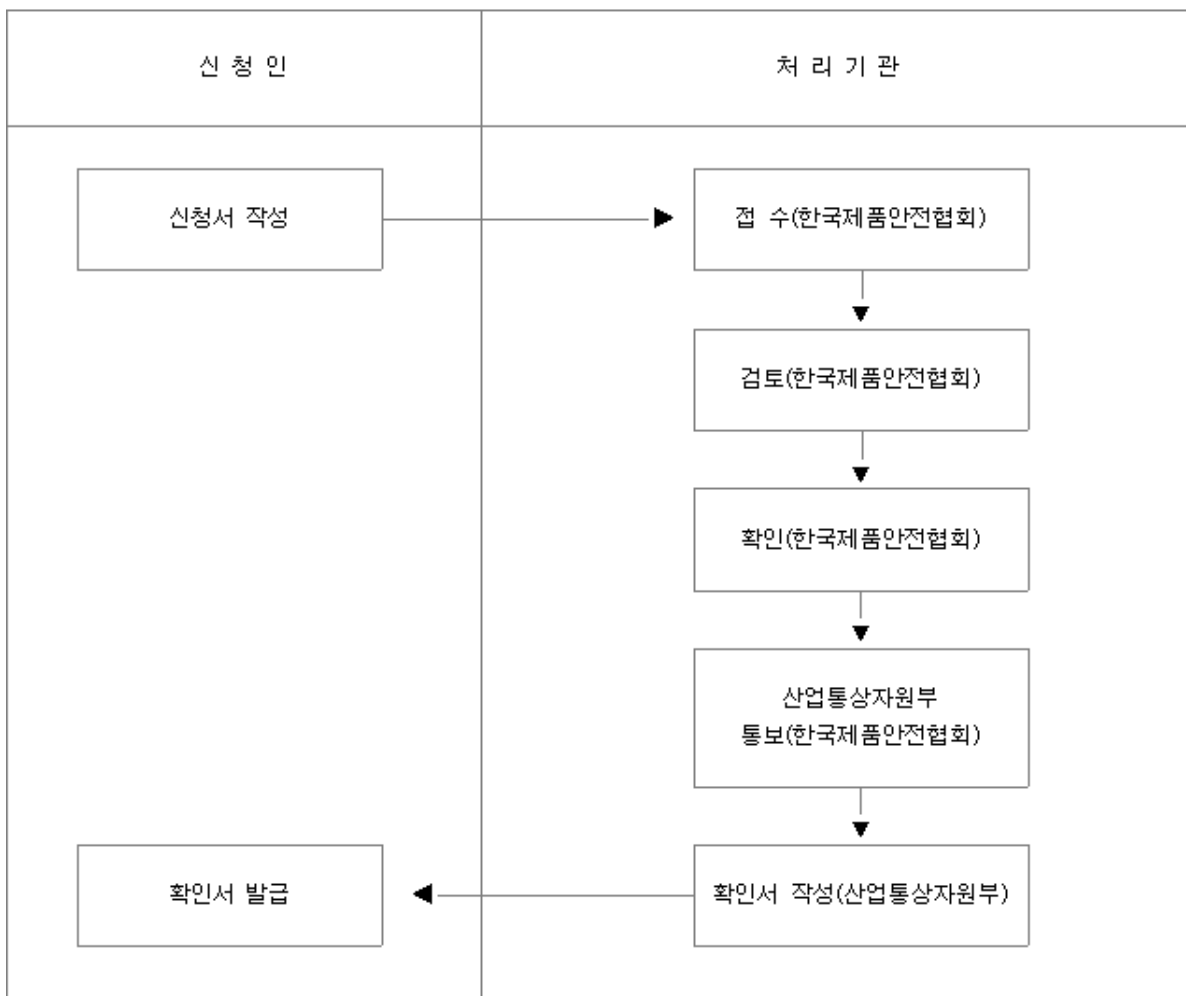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뒤 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확인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명	
	안전기준 상의 모델구분	
	제조자 제시 모델명	
	적용안전기준	

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공급자적합성 확인자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품목		주 생산품목
	모델명		안전인증·안전확인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공장 (전화번호 :)	
직원 수(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 소개서 3.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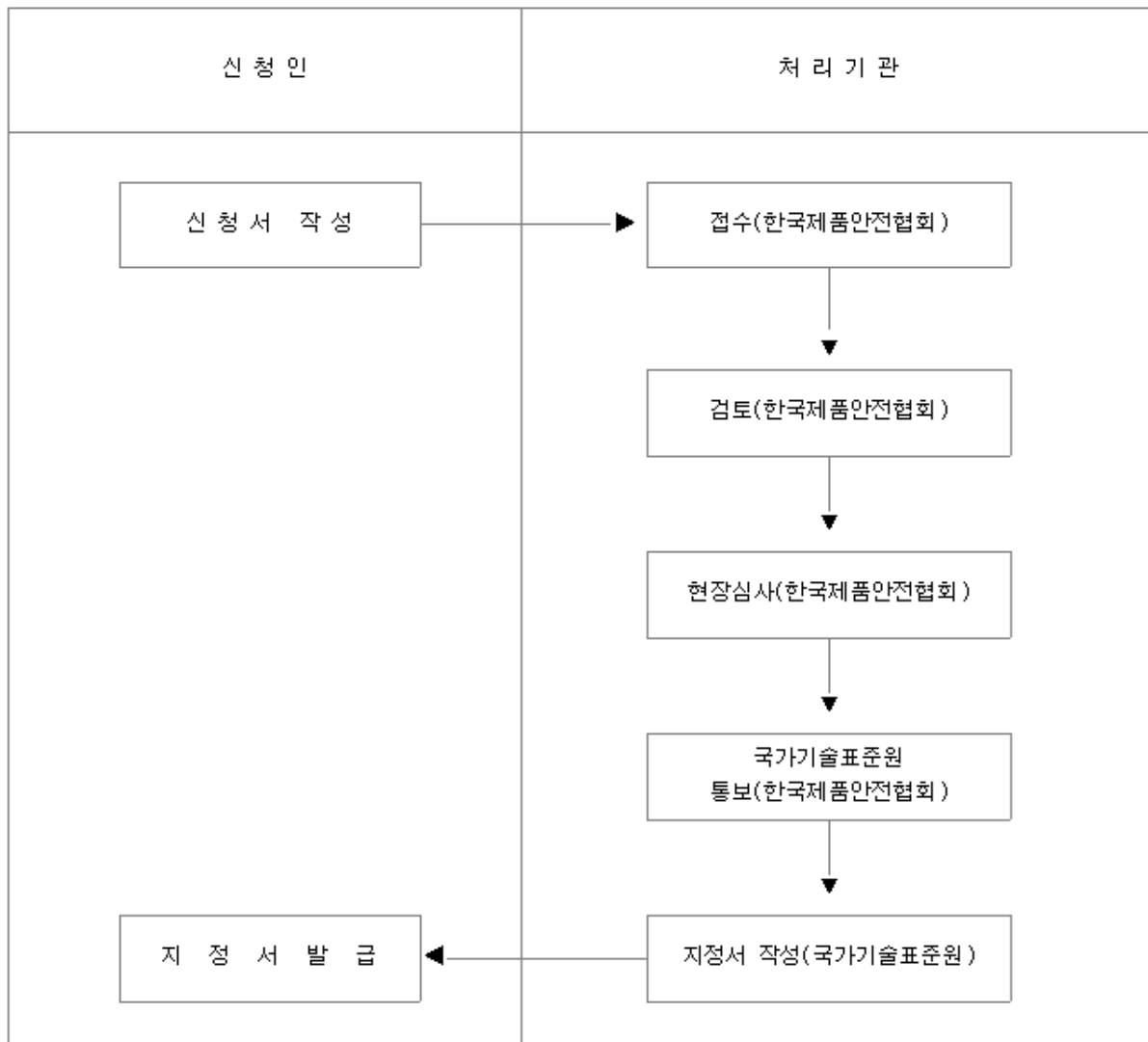
(뒤 쪽)

안 내 사 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

1. 기 업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본 사 :

○ 공 장 :

4. 지정품목(모델명) :

위 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 친화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